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일부개정 발령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이 2020.7.23.자로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각 시도는 관내 시군구(의료급여 보장기관)에, 각 협회는 회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호),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 인정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일부개정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전문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영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비상안전기획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의료기관정책과장, 홍보기획담당관, 디지털소통팀장, 감사담당관,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인사과장, 정책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상담센터장, 약무정책과장, 질병정책과장, 공공의료과장, 응급의료과장, 생명윤리정책과장, 한의약정책과장, 한의약산업과장, 보험정책과장, 보험급여과장, 보험약제과장, 보험평가과장, 예비급여과장, 의료보장관리과장, 건강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구강정책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 자살예방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과장,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보건산업진흥과장, 의료정보정책과장, 해외의료총괄과장, 해외의료사업과장, 복지정책과장, 기초생활보장과장, 자립지원과장, 지역복지과장, 급여기준과장, 복지정보기획과장, 복지정보운영과장,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사회서비스사업과장,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치매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보육사업기획과장, 보육기반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국민연금재정과장, 기초연금과장, 사회보장총괄과장, 사회보장조정과장, 사회보장평가과장, 장애인정책과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장애인서비스과장, 인구정책총괄과장, 출산정책과장, 아동복지정책과장, 아동권리과장, 아동학대대응과장, 노인정책과장, 노인지원과장, 요양보험제도과장, 요양보험운영과장,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구축추진단장, 서울특별시(복지정책과장), 부산광역시(복지정책과장), 대구광역시(복지정책과장), 인천광역시(보건의료정책과장), 광주광역시(사회복지과장), 대전광역시(복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복지정책과장), 울산광역시(복지인구정책과장), 경기도지사(복지사업과장), 강원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북도지사(복지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전라남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북도지사(사회복지과장), 경상남도지사(복지정책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복지정책과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의사협회장

주무관	백선인	행정사무관	이원의	기초의료보장과 전결 2020. 7. 24. 장 이영재
협조자				
시행	기초의료보장과-4203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10동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089	팩스번호	044-202-3972	/ tjsdls10@korea.kr / 비공개(5)